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 일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및 자구수정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을 심의하기 위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하여 전문가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문예술법인·단체 범위 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5조)
- 나.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함(안 제16조)
- 다. 문화지구의 지정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7조)
- 라.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8조)
- 마. 미술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하의 위원에서 50인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인원을 변경하여 전문가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안 제18조2)

바. 미술위원회 구성인원을 50인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명의 위원으로 회의 인원을 구성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8조의3)

사.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9조의2)

아.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7일까지(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문교사회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을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16조 제4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한다.

제17조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8조의 제1항 중 “영 제24조제1항”을 “영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에 따라”로 하며, 동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영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을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의 “15인이하의”를 “50인이하의”로 한다.

제18조의3 제1항의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 및 제19조를 준용하고”를 “미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서는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제18조의3 제4항의 “영 제24조의2제2항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영 제13조제2항 및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하고 “영 제24조의3제3항에 의하여”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의2 제1항의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24조제5항의 별표 1의2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5항의 별표 2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제1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 <u>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① <u>법 제7조에 따른</u> ----- ----- -----		
1. ~ 3.(생략)	<u>각 호의 어느 하나</u> ----- 1. ~ 3.(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u>	② <u>법 제7조에 따른</u> ----- ----- ----- -----.		
제5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5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군수·구청장(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u>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u>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 ----- ----- <u>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u> -----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u>4. 판매 및 영업시설</u>	<u>4. 판매시설</u>		
5.(생략)	5.(생략)		

현행	개정안
제17조 (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제17조 (문화지구의 지정) ----- ----- ----- 제8조 ----- ----- -----
제6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6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18조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① 군수·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영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은 미술품의 예술성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별도 미술전문가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18조(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① ----- 영 제12조제1항----- ----- ----- 법 제9조에 따라-----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 ----- ----- ----- -----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 (미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술위원회는 <u>15인이하의</u>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구·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업무담당과장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미술장식품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8조의2((미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술위원회는 <u>50인이하의</u>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구·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업무담당과장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미술장식품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8조의3 (미술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 및 <u>제19조</u>를 준용하고, 이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생략) ③(생략) ④ 군수·구청장은 <u>영 제24조의2제2항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u> 규정에 의하여 미술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주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미술위원회는 <u>영 제24조의3제3항에</u> 의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미술위원회의 운영 등) ① <u>미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u>,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5조제3항, 제7조, 제8조 및 <u>제9조</u>를 준용하며, 이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 ----- <u>영 제13조제2항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u> ----- ----- ----- ----- <u>영 제14조제3항에 따라</u>-----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u>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u>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u>영 제24조제5항의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u>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의2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u>영 제15조에 따라</u>----- ----- ----- -----. 제20조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u>영 제12조제5항의 별표 2에 따른</u> ----- -----.